

■ 약관명 :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정서(협력기업용) (5-06-0992)

■ 시행예정일: 2023.04.18. (예정)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
■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(목적) ~ 제9조 (외상매출채권 대금의 선지급 신청, 채권 대금의 선지급 및 만기 결제) <생략></p> <p>제10조(업무의 제한) 다음 각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 <p>1. 허위 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<u>발행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</u></p> <p>2.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</p> <p>제11조(지급보류 등록) ~ 제14조(관할법원의 합의) <생략></p>	<p>제1조(목적) ~ 제9조 (외상매출채권 대금의 선지급 신청, 채권 대금의 선지급 및 만기 결제) <좌동></p> <p>제10조(업무의 제한) 다음 각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 <p>1. 허위 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<u>발행하여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</u></p> <p>2.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</p> <p>제11조(지급보류 등록) ~ 제14조(관할법원의 합의) <좌동></p>	<p>문구 명확화</p>